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적절한가?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물론 일부 사무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 사업주에 있기 때문인데, 산재보험료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보수총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다.

$$\text{산재보험료} = \text{보수총액} \times (\text{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text{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사업 형태와 산재사고 위험률이 유사한 업종들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동일 업종 집단 내에서는 동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업종별 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 업종 내의 산재보험료와 보험 지급을 기초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업종별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는 업종에 따라 출퇴근 시 위험도가 다르지 않아 전 업종에 동일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그리고 산재 예방 및 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이를 토대로 구성된다. 즉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및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로 구성된다. 여기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업종별 과거 3년 동안 징수한 산재보험금 총액 대비 지출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다. 즉 업종별로 걷은 보험금에서 산재사고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업종별로 산재사고가 많아서 지출이 많으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다음 추가지출률은 향후 지급될 연금과 당해 연도에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 산재보험급여지급률과 추가지출률을 합한 보험료율이 전체 보험료율의 85%를 차지한다. 부가보험료율은 산재예방이나 산재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체 업종 모두 동일 적용된다.¹⁾

국가별로 살펴보는 사업주 부담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많다고 느끼고, 노동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사업주는 적립금이 많으니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하고, 노동자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외국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여러 사회보험과 맞물려 있다. 건강보험, 실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 사회 보장성 급여뿐 아니라 취업률 또는 실직률, 장애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산재보험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료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2020.08.31

국가별 사회보험료 부담률²⁾

(단위 : %)

국가		국민연금	상병/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총계
한국	노동자	4.5	3.43+0.395*	-	0.8#	8.5
	사업주	4.5	3.43+0.395	0.6~18.5 (1.53)**	0.8 0.25~0.85##	10.075~28.475 (10.575~11.505)
	계	9.0	6.86+0.79	0.6~18.5 (1.53)	1.85~2.45	19.10~37.6 (20.03~20.63)
미국	노동자	6.2	-	-		6.2
	사업주	6.2	-	1.3	0.6	8.1
	계	12.4	-	1.3	0.6	13.2
독일	노동자	9.3	8.575	-	1.5	19.375
	사업주	9.3	8.575	1.18	1.5	20.555
	계	18.6	17.150	1.18	3.0	39.939
일본	노동자	9.15	5.0	-	0.3	14.45
	사업주	9.15	5.0	0.25~8.8	0.9	15.3~23.85
	계	18.30	10.0	0.25~8.8	1.2	29.75~38.3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 전 사업 평균요율, ()의 수치는 산재보험 전 사업 평균요율을 적용했을 때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비용(사업주만 부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급여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자는 8.5%로 독일의 43.9%, 일본의 58.8%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주의 부담은 산재보험을 평균요율을 적용했을 때 약 11%로 독일의 53.5%, 일본의 71.9%로 사업주의 부담이 노동자보다 높았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최고요율을 적용하면 독일이나 일본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경우 상병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업주 부담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상당수 기업이 건강보험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70% 이상이 일반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보험³⁾에 가입하고 있어 한국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회보장에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다. 2019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0%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지불했다. 한국은 GDP의 12.2%를 지출했으며, 미국

2)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 out the World(ISSA) 자료를 이용해서 재구성. 미국은 2019년 자료, 독일과 일본은 2018년 자료임. 한국은 2021년 정부 발표 자료임.

3) Boogaard K. 16 Questions You Never Even Realized You Had About Short-Term Disability Benefits. <https://www.themuse.com/advice/what-to-know-about-short-term-disability>

18.7%, 일본 22.3%(2017), 독일 25.9%를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했다.⁴⁾ 물론 이 사회보장 비용에는 사회보험 지출뿐 아니라 세금과 기타 지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사회보장 비용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일본(70%)이나 독일(55%)보다 높아서⁵⁾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동자나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회보험 전체 부담 중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율을 적용했을 때 14%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크지 않다. 그렇지만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재발생을 낮아지면 사업주 부담도 낮아져...

최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데 있어, 업종 구분을 축소하는 노력이 있다. 2011년 62개였던 업종 수가 2018년 45개, 2019년 35개로 축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다시 28개로 축소되었다. 업종별 최고요율도 2011년에는 36.0%에서 2019년 22.5% 그리고 2021년에는 18.5%로 감소돼 업종에 따른 부담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 최고요율도 석탄광업 및 채석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업종이 임업으로 5.8%이고, 건설업도 3.6%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재보험료율 자체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높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전체 사회보험 비용은 이들 국가보다는 낮고, 특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 중 산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산재보험 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점차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산재발생률이다. 산재발생이 낮아지면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선진국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낮은 것은 보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OECD Data.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5) 박용하. 사회보장지출 적정수준에 대한 고찰. 노동보험포럼 2016;9(2):6-19